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258
----------	-------

발의연월일 : 2026. 4. 10.

발 의 자 : 강명구 · 박정훈 · 김형동
김기현 · 윤한홍 · 성일중
나경원 · 이성권 · 김정재
엄태영 · 구자근 · 김미애
김재섭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운용하도록 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를 운영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배당·이자소득에 대하여 한도금액 내에서 비과세하고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9%로 분리과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한도는 연간 2천만원(총 1억원)이고,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금액은 200만원(서민·농어민형의 경우 400만원)으로 민생 경제를 위하여 세제지원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한도를 연간 6천만원(총 3억원)으로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금액 또한 600만원(서민·농어민형의 경우 1천2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18제2항 및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의18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400만원”을 “1천2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0만원”을 “600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1억원”을 “3억원”으로 하고, 같은 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6\text{천만원} \times [1 + \text{가입 후 경과한 연수}(\text{경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에는 4년으로 한다})] - \text{누적 납입금액}$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1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략)</p> <p>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금액은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p>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u>400만원</u> 가. ~ 다. (생략)</p> <p>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 <u>200만원</u></p> <p>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p> <p>1. ~ 4. (생략)</p> <p>5. 총납입한도가 <u>1억원</u>(제91조의14에 따른 재형저축 또는 제91조의16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는 재형저축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p>	<p>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p> <p>1. ----- -----<u>1천200만원</u> 가. ~ 다. (현행과 같음)</p> <p>2. ----- -----<u>600만원</u></p> <p>③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3억원</u>----- ----- ----- ----- ----- -----</p>

하이코, 연간 납입한도가 다
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일
것

2천만원 × [1 + 가입 후 경과한
연수(경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에는 4년으로 한다)] - 누적
납입금액

④ ~ ⑫ (생략)

--

6천만원 × [1 + 가입 후 경과한
연수(경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에는 4년으로 한다)] - 누적
납입금액

④ ~ ⑫ (현행과 같음)